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4회 제1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4. 6.

이 진 환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이진환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제정조례안은, 달서구에서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 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2조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에 따른 지원내용과 지원 방법 및 지원대상 결정을 위한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지원중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부정 수급에 따른 사후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4년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4055
----------	----------

발의연월일: 2024. 5. 30.

발의자: 이진환, 김정희, 서보영,
이선주, 김장관

1. 제안이유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제도적 한계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
- 나.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다. 지원대상에 따른 지원내용 및 방법을 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7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사고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급식, 교육 및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
2. 명절위문금 및 물품
3. 긴급구호비 및 의료비
4. 폭염 및 월동대책비
5.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 관련 서비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수준 및 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대상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구 지역내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신청자 조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중지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이 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 목적이 달성되거나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產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
다운 생활을 유지 ·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